"당당한 사회복지사, 대한민국 복지의 힘찬 미래를 열어갑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KOREA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수신자 :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설립된 대학교 및 대학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경 유) : 사회복지관련 학과장 및 대학원장
제 목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변경사항 안내

---

1.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제46조에 따른 법정단체로서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에 관련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 적용**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교과목의 이수를 기준으로 법령이 이루어져 있으며, 재학생의 경우 입학일 기준이 아닌 각 재학생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일부 이수하였거나 수강중임을 기준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가.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변경사항 안내
나. 법령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다. 주요변경내용
1) 이수해야 하는 학점 상향

기존	변경
필수과목 10과목 30학점(과목당 3학점)이상 선택과목 4과목 12학점(과목당 3학점)이상	**필수과목 10과목 30학점(과목당 3학점)이상** **선택과목 7과목 21학점(과목당 3학점)이상**

2) 명칭이 변경되는 교과목(6과목)

기존	변경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역사**
의료사회사업론	**의로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	**학교사회복지론**

※ 명칭이 변경되는 교과목의 경우 기존 교과목명도 이수 교과목명으로 인정됩니다.

3) 신규 추가되는 선택과목(7과목)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4) 사회복지현장실습

구분	기존	변경
실습시간	120시간 이상	**160시간 이상**
실습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	**보건복지부장관 선정 기관**
실습세미나	-	**2시간 이상 15회 실시 등**

※ 실습기관의 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라. 법령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공지사항 399번, 400번, 411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팀장 오진규 본부장 박용오 회장 오승환

협조자

시 행 한사협-2019-공문발송-771 (2019. 12. 24.) 접 수 (. .)

우) 0729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문래동3가, 메가벤처타워) 4층 404호 / 홈페이지 : http://www.welfare.net

전화 070-7122-1030 / 전송 02)786-0191 / 이메일 hayeneye@kasw.or.kr / 공개